

**한국스파이텍스사코주**  
**상품 판매 및 용역 공급 표준 조건**

**1. 용어의 정의**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국내에서 은행이 영업을 위해 개점하는 날을 의미한다.

“**구매자**”는 국내 및 해외에서의 판매자의 고객을 의미한다.

“**표준조건**”은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또는 상기의 판매와 제공 모두에 대한 본 표준 조건을 의미한다.

“**계약**”은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또는 상기의 판매와 제공 모두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전자 거래 게이트웨이(Electronic Trading Gateway)**”는 예상 구매자가 주문서를 발행하고 대급을 지급하기 위한 판매자의 전자 시스템을 의미한다.

“**긴급호출**”은 판매자가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표준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구매자의 플랜트 또는 장비의 긴급 호출 서비스를 의미한다.

“**불가항력 사건**”은 (판매자 또는 다른 일체의 자의 인력과 관련되어 있던지 간에)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사 분쟁, 공공시설 또는 운송망 중단, 자연재해, 전쟁, 폭동, 테러, 시민 소요, 악의적인 파손행위, 법률 또는 정부 명령, 규칙, 규정 또는 지시의 준수, 사고, 공장 설비 또는 기계의 고장, 화재, 홍수, 폭풍, 공급자 또는 하청업체의 불이행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판매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건을 의미한다.

“**상품**”은 주문확인서에 상술된 바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하기로 동의한 상품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은 모든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반도체 배치 설계에 대한 권리 (semi-conductor topography rights), 의장권, 상표, 상호, 특허, 도메인명 그리고 전세계에서 유지되는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의미한다.

“**대형제품**”은 “스파이텍스 응축 회수 펌프(Spirax Condensate Recovery Units)”, “급수탱크(Feed Tanks)”, “블로우다운 장치 (Blowdown Vessels)”로 알려진 제품 그리고 판매자가 명시한 한도를 초과하는 기타 일체의 제품을 의미한다.

“**용역 책임 한도**”는 주문확인서에 명시된 용역계약(또는 상품 및 용역 계약의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의 전체 한도를 의미한다.

“**손실**”은 다음 각항의 사항을 의미한다:

- (a) 일체의 간접, 특수 또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
- (b) 데이터 또는 기타 장비나 자산의 손실;
- (c) 경제적 손실 또는 손해;
- (d) (각각의 경우, 부수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 발생; 또는
- (e) 일체의 실질적이거나 예상되는 이득, 이자, 수익, 예금 또는 사업 또는 평판의 손실.

“**판매자**”는 한국스파이텍스사코주를 의미한다.

“**용역**”은 주문확인서에 상술된 바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한 용역을 의미한다.

“**특수 장비**”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명세서에 따라 생산하는 주문 제작 상품을 의미한다.

“**상품명세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상품 명세서를 의미한다.

“**용역명세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용역 명세서를 의미한다.

**2. 계약 성립 및 계약조건 적용**

- (a) 모든 계약은 계약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b) 판매자의 수권 서명인이 서면에 서명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 조건의 변경은 유효하지 않으며, 계약의 판매자와 구매자(또는 이들의 수권 대리인)가 서면에 서명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 조건의 변경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c) 예비 구매자는 판매자의 구매주문서 양식 (“구매주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상품 또는 용역 (또는 상품과 용역 모두)에 대한 주문을 해야 한다. 각각의 구매주문서는 예비 구매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판매자의 상품 또는 용역 (또는 상품과 용역 모두)을 구매하기 위한 청약으로 간주된다.
- (d) 구매주문서는 판매자가 예비 구매자에게 예비 구매자의 계약조건에 따른 청약의 승낙을 표시한 주문확인서 양식(“주문 확인서”)을 발행한 때에만 승낙된 것으로 간주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은 판매자가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또는 상품과 용역 모두)을 구매자에게 납품하거나 제공한 때에 성립된다.
- (e) 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완전한 합의 내용에 해당하며, 구매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매자가 직접 또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제공한 일체의 진술 또는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다.
- (f) 구매자는 구매주문서와 해당 명세서에 명시된 상품 또는 용역(또는 상품과 용역 모두)이 완전하고 정확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 (g) 상기의 조건은 계약에 적용되며, 구매자가 추가 또는 포함시키고자 하거나 거래, 관습, 관행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암시되는 다른 모든 조건을 배제한다. 상기의 조건은 판매자가 서면으로 발행하고 주문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추가 조건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 3. 견적 및 구매주문서

- (a) 판매자가 발행한 견적은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자가 주문확인서를 구매자에게 발송하기 전까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 (b) 판매자가 발행한 견적은 구매자가 서면통지를 통해 중도 철회하지 않는 한 발행일 후 22영업일만 유효하다.
- (c) 계약조건 제3조 제(d)항에 따라, 판매자가 승낙한 구매주문서는 명시된 상품 또는 용역 (또는 상품과 용역 모두)에 대한 가격이 판매자의 견적서에 명시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판매자의 견적이 발행된 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승낙 당시 판매자가 철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한다.
- (d) 판매자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 견적 유효기간 내에 언제라도 철회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할 권리를 보유한다. 판매자가 판매나 공급을 위해 제안한 상품 또는 용역 (또는 상품과 용역 모두)의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또는 상품과 용역 모두)에 대한 기존의 견적은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판매자는 예비 구매자에게 새로운 견적을 발행해야 한다.
- (e) 판매자의 견적서에 명시된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 (f) 예비 구매자는 모든 구매주문서를 팩스, 우편, 이메일 또는 판매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전화나 전자 거래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행해야 한다.

### 상품 판매

#### 4. 상품

- (a) 상품에 대한 기재사항은 상품명세서에 명시된다. 상품은 중요한 측면에서 상품명세서에 부합해야 한다. 상품명세서에 기재된 치수나 중량은 예상 값일 뿐이다.
- (b) 상품은 모든 성능지수(performance figures), (상품명세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을 제외한) 설명서, 도면과 샘플은 예상 값일 뿐으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제한된다. 판매자는 성능지수, 설명서, 도면과 샘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성능지수, 설명서, 도면과 샘플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샘플에 대한 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c)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상품명세서를 변경할 수 있다:
  - (i)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상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품의 변경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경우; 또는
  - (ii) 관련 법령 또는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경우.
- (d) 판매자는 납품 전 언제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판매자의 상품 비용 증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상품 가격을 증액할 수 있다:
  - (i) (환율 변동, 세금 및 관세 증가 그리고 상품 조달 또는 생산 비용 증가) 판매자의 통제를 벗어난 일체의 요소;
  - (ii) 납품일, 주문한 상품의 수량 또는 유형, 또는 상품 사양에 대한 구매자의 변경 요청; 또는
  - (iii)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지시 전달 지연 또는 구매자의 상품에 대한 적합하거나 정확한 정보나 지침 제공 실패.
- (e) 구매자가 이후에 주문하지 않은 상품의 모든 도면, 설계와 견적은 판매자의 자산으로 머무르며 구매자는 이를 기밀로 취급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판매자는 상기의 도면, 설계 또는 견적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5. 제품 발송 및 납품

- (a) 계약조건 제5조에서, “상품”은 분할 납품 대상이 아닌 상품 전체 또는 분할 납품 대상인 경우 개별 분할 납품 대상을 의미한다.
- (b) 판매자가 서면으로 이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상품의 납품은 판매자가 주문확인서에 명시한 장소로 이뤄진다 (“납품장소”).
- (c) 명시된 납품일은 예상일뿐 납품기한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자는 명시된 납품일을 충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납품일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납품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 (d) 판매자는 판매자의 과실에 의할지라도 상품 납품 지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계약조건에 용어가 정의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e) 상품 납품 지연 시, 납품 지연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f) 상품 납품은 납품지점에 상품이 도착한 때 완료된다.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상품 납품 완료 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g) 계약에 명시적으로 이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납품 방식을 선적하고 화물료를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표준 화물료와 포장비는 대형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가격에 포함된다. 상품이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특수한 방식 또는 속달로 납품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운송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구매자가 요청하거나 판매자가 특별 포장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여) 특별 포장이 요구될 경우, 판매자는 해당 포장료 전액을 구매자에게 청구한다.
- (h) 운송 중인 상품의 운송 및/또는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판매자는 구매자의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i) 구매자는 반드시:
  - (i) 상품 인도 시 상품을 검사하고;
  - (ii) 판매자와 운송인에게 인도일로부터 4영업일 내에 수량부족분이나 하자에 대해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 상품을 수령하였을 시점 후 10 영업일 내에 상품 미수령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리고
  - (iii) 수량부족분이나 하자 있는 상품 납품 시, 판매자에게 상품을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상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 (j) **판매자의 상품 미납품에 대한 책임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상품을 납품하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청구금액에 비례한 금액에 대한 신용전표(credit note)를 발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 (k) 판매자는 상품을 분할 납품할 수 있으며, 개별 분할 납품은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된다. 계약조건의 다른 조항을 제한하지 않고, 계약 또는 분할 납품 실패나 하자 시, 구매자는 다른 계약이나 다른 분할 납품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l)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가 상품이 준비되었다는 판매자의 통지 발송으로부터 2영업일 내에 구매자가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상품 납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구매자가 상품에 대한 적절한 지킴, 서류 또는 인허가를 제공하지 않아 판매자가 기한 내 상품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 (i) 상품 납품은 판매자가 상품이 준비되었다고 구매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째 되는 날 오전 9:00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 (ii)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납품 완료 시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그리고
  - (iii) 판매자는 납품 전까지 상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보관료와 보험료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비용과 경비를 부담한다. 구매자는 상품 납품 수령 실패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발생된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m) 판매자가 상품이 준비되었다고 구매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후에도, 구매자가 상품 납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전부나 일부를 재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6. 소유권

- (a) 공급된 상품의 소유권은 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기 전까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i) 상품; 그리고
  - (ii)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한 기타 일체의 제품이나 서비스.
- (b)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구매자는:
  - (i) 상품의 수탁자에 해당한다;
  - (ii) 상품이 구매자의 자산으로서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매자가 소유하는 기타 일체의 제품들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 (iii) 상품에 부착되거나 상품과 관련된 식별 표시나 포장을 제거, 훼손 또는 희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 (iv)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구매자의 부지, 플랜트 또는 장비에 상품을 부착하거나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v) 상품을 적합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 (vi)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이전되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판매자가 승인한 명성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대금 전액에 대해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고,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판매자의 상품에 대한 이익이 보험약관에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구매자가 상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판매자의 요청 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구매자는 보험증서와 보험금을 판매자를 위하여 신탁보관해야 한다;
  - (vii) 계약조건 제20조 제(a)항 제(iv)호 내지 제(x)호에 명시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viii) 판매자가 수시로 요청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 (ix) 상품 또는 상품에 대한 이익을 처분하거나 담보나 부담을 설정하거나 이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단, 구매자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공정한 조건으로 독립적인 제3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다.
- (c)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구매자가 20조 제(a)항 제(iv)호 내지 제(x)호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거나 판매자가 상기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구매자에게 통지할 경우, 상품이 아직 재판매되지 않았거나 다른 제품에 취소불가능하게 통합되지 않는 한, 판매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타 일체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판매자는 언제라도 구매자에게 상품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의 부지에 출입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 7. 상품 보증

- (a) 계약조건 제7조 제(b)항에 따라, 판매자는 상품 납품 시 상품납품일로부터 36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한다:
  - (i) 상품이 상품명세서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 (ii) 자재나 제작기술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점.
- (b) 패키지 상품이거나 전자 작동되거나 정교한 상품일 경우, 판매자는 상품 납품 시 상품납품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한다:
  - (i) 상품이 상품명세서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 (ii) 자재나 제작기술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점.
- (c) 계약조건 제7조의 나머지 규정들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가 (계약조건 제7조 제(a)항 또는 제(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상품의 보증기간 내에 상품을 반품하고 판매자의 검사 결과 해당 상품의 자재나 제작기술에 하자가 있거나 해당 상품이 해당 상품명세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판매자는:
  - (i)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자재나 제작기술에 하자가 있거나 해당 상품이 해당 상품명세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통지하고; 그리고
  - (ii) 구매자에게 상기의 통지를 한 후;
    - (aa) 판매자가 생산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재량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고 하자를 수리하거나, 하자있는 상품의 하자 있는 부분을 교체하거나 하자있는 상품 (전체)을 교체하거나; 또는
    - (bb) 판매자가 공급하였으나 판매자가 생산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권리를 가지는 범위에서, 구매자의 비용으로 (해당 경우 담보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품 전체 또는 일부 또는 해당 부품의 제조업체 및/또는 공급업체에 대해 판매자가 해당 하자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무나 보증 상의 이익을 양도하거나 구매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 (d) 상기의 보증은 상품의 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i) 상품 운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 전체 또는 일부의 가치 하락에 의한 경우;
  - (ii) 상품에 대한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고 있는 동안 하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경우:
    - (aa)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직원, 대리인, 자문 또는 하청업체의 고의적 위반행위 또는 과실;
    - (bb) 사건의 발생;
    - (cc) 구매자가 상품 보관, 설치, 시운전 또는 유지에 대한 판매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dd) 모범 상관례를 구매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ee) 판매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의 변경 또는 수리한 경우;
    - (ff) 합리적인 마모, 과실 또는 수격(waterhammer), 부식 또는 시스템내 과도한 먼지, RFI 또는 전력공급 중단과 같은(그러나 상기의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조건.
- (e) 계약조건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자는 상품의 제8조에 명시된 보증 준수 실패에 대해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f) 본 계약조건은 판매자가 계약조건 제7조 제(c)항에 따라 공급하고 수리 또는 교체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8. 반품

- (a) 판매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상품(의 전부나 일부)을 반품할 경우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을 구매자에게 환불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구매자는 청구받은 금액의 30%를 최소 취급수수료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 (b)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은 반드시 운송과정에서 파손 없이 적합하게 포장하여 밀봉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구매자에게 납품된 날로부터 22영업일 내에 판매자가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조항 제8조 제(b)항에서 “상품”은 제5조 제(a)항에 규정된 의미에 따른다.

## 9. 지침 및 현장의 보건과 안전

- (a) 구매자는 상품의 이용과 적용에 관한 판매자의 서면 지침과 해당 지침의 변경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구매자 이외에 상품을 취득하거나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자에게 판매자의 지침을 전달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b) 구매자는 판매자의 설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품 이용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판매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10. 수출판매

- (a)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수출하기 위해 공급될 경우, 다음의 추가 조건이 적용되며, 그리고 계약조건 제10조와 상기의 조항들이 상충할 경우, 제10조가 우선한다.
- (b) 수출 납품 및 서류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 (c)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서면으로 이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주문확인서 수령 즉시 판매자를 위하여 구매자는 판매자가 만족할만한 최소불능 신용장을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용장은 상품 가격(과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과 관세)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6개월 간 유효해야 한다. 판매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Keb Hana bank에 제시한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 (d) 이와 반대로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구매자에게 납품할 경우 국제상공회의소가 작성한 무역조건( INCOTERMS)의 “공장 인도 조건 (Ex

Work)”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납품할 경우,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이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 파손, 해상 운항시 발생 가능한 위험 또는 전쟁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e) 수출의 경우 수출을 하는 당사자 또는 수입의 경우 수입을 하는 당사자가 계약 상 수출, 재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모든 필요한 허가 또는 기타 정부 승인을 취득할 책임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필요한 상기의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하는 데 협력하며, 각각 필요한 허가 또는 정부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상품의 인도, 사용, 처분, 최종 사용, 공급출처, 원산지과 재수출에 대한 진술서, 증서 및 확인을 제공한다.
- (f) 상기의 허가 또는 승인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정부 수수료 또는 부과금은 상품 수출의 경우 수출을 하는 당사자 또는 상품 수입의 경우 수입을 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 (g)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
  - (i) 대한민국 정부, 영국 정부, 국제연합, 유럽연합 또는 기타 관할 기관이 상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매자가 알고 있는 국가에 상품 재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 (ii) 대한민국 정부, 영국 정부, 국제연합, 유럽연합 또는 기타 관할 기관이 상품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에 재판매할 것으로 구매자에게 알려지거나 구매자가 이와 같이 의심하는 자에게 상품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
- (h) 구매자는 구매자의 계약조건 제10조 제(g)항에 규정된 구매자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발생된 모든 책임, 손해, 비용과 경비를 판매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i) 구매자는 판매자가 일체의 관련 수출입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상품 목적지와 사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 **용역 제공**

### **11. 제공 기간**

- (a) 주문확인서에 이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용역 제공에 대한 합의는 계약 제2조 제(d)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주문확인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용역기간”).
- (b) 판매자는 용역기간 동안 언제라도 용역에 대한 대금을 인상할 권리를 보유한다. 판매자는 인상 예정일 최소 8주 전에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이에 대해 통지한다. 구매자가 상기의 가격 인상을 승낙할 수 없을 경우 판매자의 통지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판매자는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4주 전에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2. 용역 이행**

- (a) 판매자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용역명세서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자의 주문확인서에 명시된 현장의 구매자의 공장 설비 및/또는 장비에 필요한 예비품, 교환 부품 그리고/또는 소모품을 공급할 것을 동의한다.
- (b) 판매자가 예비품, 교환 부품 그리고/또는 소모품을 공급하는 데 동의한 경우, 상기의 공급은 엄격히 계약조건에 따라 이뤄진다.
- (c) 명시된 모든 이행일은 예상일뿐 용역이행기한은 본 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자는 명시된 이행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이행일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용역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 (d) **판매자는 판매자의 과실에 의할지라도 용역 이행 지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계약조건에 용어가 정의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e) **계약조건 제12조 제(g)항에 따라, 용역 이행 지연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f) **계약조건 제12조 제(g)항에 따라, 용역 미이행에 대한 책임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용역을 이행하거나 해당 용역에 대한 청구금액에 비례한 금액에 대한 신용전표(credit note)를 발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 (g) 판매자의 용역 이행이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계약 의무 이행 실패(“구매자 불이행”)로 방해를 받거나 지연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구매자 불이행이 발생했다고 통지한 때:
  - (i)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자 불이행을 배상하기 전까지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을 제한받지 않고 용역 이행을 중단하고, 구매자 불이행이 판매자의 용역 이행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범위에서 의무이행을 면제받기 위해 구매자 불이행을 근거로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ii) 판매자는 용역 이행 실패나 지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구매자에게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 (iii) 구매자는 판매자가 요청한 때 구매자 불이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모든 손실을 판매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h) 판매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판매자를 대신하여 (부품 또는 장비의 시운전, 설치, 유지 또는 수리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하도업체를 고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 (i) 판매자는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관계 법률과 규칙을 준수할 것을 보증한다. 그러나, 판매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 설비 또는 장비의 전부나 일부로 인해 발생된 구매자의 공장 설비나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의 감소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배제한다:-

- (i) 설치, 유지 또는 작동 지침에 따르지 않고 상품이 사용되거나 작동된 경우;
  - (ii) 판매자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고 상품이 사용되거나 작동된 경우; 또는
  - (iii) 플랜트 또는 장비가 설치나 시운전된 날 또는 판매자의 직원 또는 하청업체가 직전에 방문한 날 이후, 구매자 또는 일체의 제3자가 일체의 방식으로 상품을 조정, 변경 또는 조작한 경우.
- (j) 구매자는 구매자의 공장설비와 장비가 BS2486을 준수하는 품질의 용수와 함께 제공되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매자의 공장설비와 장비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추가 요건을 준수한다는 점을 판매자에게 보증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상기의 보증 위반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구매자의 공장 설비 또는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 감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배제한다.
- (k) 효율적인 밸브 시트 (seat) 지점은 반드시 용역 제공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안전 밸브(safety valves)와 완화밸브(relief valves)의 테스트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구매자가 효율적인 밸브 시트 (seat) 지점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거나, 판매자는 밸브 제조자 또는 구매자가 공급한 엔지니어링 도면을 통해 입수한 데이터를 근거로 효율적인 밸브 시트 (seat) 지점을 계산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제공된 효율적인 밸브 시트 (seat) 지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이 테스트의 정확성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상기의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판매자는 제공된 효율적인 밸브 시트 (seat) 지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오류 테스트 결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l) 판매자는 주문확인서에 명시된 사양에 따라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구매자의 공장 설비 또는 장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매자의 비용으로 교체할 권리를 보유한다.
- (m) 대신에, 판매자가 현장에서 적합하거나 경제적으로 수리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구매자의 공장 설비 또는 장비의 부분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개별 항목의 수리 비용 견적을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구매자가 해당 항목을 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용역 범위를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 13. 구매자 부지 접근

- (a) 구매자는 용역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판매자에게 협력해야 하고 판매자가 용역 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는 상기의 정보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정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b) 구매자는 용역이 개시되어야 하는 날 전에 일체의 필요한 인허가와 동의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 (c) 구매자는 판매자 그리고 판매자의 직원, 대리인, 자문과 하청업체가 부지 안전과 보안에 대한 구매자의 합리적인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에게 계약이 적용되는 구매자의 부지 그리고 공장설비와 장비에 자유롭게 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예정된 방문 시에 판매자의 직원, 대리인, 자문과 하청업체가 구매자의 부지 또는 공장 설비나 장비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부지에서 대기한 시간과 후속 방문 비용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d)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의 용역 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안전한 보관 장소를 제공하고 모든 판매자의 자재, 장비, 서류와 기타 자산("판매자 용역 장비")을 해당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구매자가 위험을 부담하여 보관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자 용역 장비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
- (e) 판매자의 직원, 대리인, 자문과 하청업체가 방문하기 전에, 구매자는:
- (i) 파이프 단열재(pipe lagging)를 벗겨야 하며;
  - (ii) 구매자의 공장 설비와 장비에 작업을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적합한 비계(scaffolding)를 제공하고 세우며; 그리고
  - (iii) 일체의 장비와 필요한 리프팅 장비와 기사를 제공한다.
- (f) 판매자의 직원, 대리인, 자문과 하청업체가 방문한 후, 구매자는 파이프 단열재(pipe lagging) 복원과 세워졌던 비계의 분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g)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안전모, 보안경, 작업복과 보호용 신발을 제외한) 구매자의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특수 안전 의복과 장비를 판매자의 직원, 대리인, 자문과 하청업체에게 제공한다.  
→ 기존 h 항 삭제
- (h) 긴급호출은 계약이 적용되는 구매자의 공장 설비 또는 장비에 한정하여 공장설비 또는 장비의 실제 발생된 긴급 고장을 위한 것으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주문확인서에 명시된 적합한 1일 요금을 청구한다. 개별 긴급 호출 건은 용역 제공에 대해 주문확인서에 명시된 용역일 수를 초과한 추가 용역 제공일 1일로 청구된다.
- (i) 구매자는 판매자가 항상 구매자의 부지를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지 않으며(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그리고 부지의 부지와 관련하여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 또는 관습법 상의 일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 14. 지급

- (a) 상품과 관련하여, 계약조건 제14조 제(d)항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 납품 완료 시 또는 이후

- 언제라도 상품의 구매가격 전액을 청구한다.
- (b) 용역과 관련하여,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청구한다.
  - (c)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계약에 명시되지 않으나 계약과 관련된, 추가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계약조건은 상기의 추가 상품 또는 용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자들이 이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구매주문서 번호에 따라 상기의 상품과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14조 제(a)항과 제(b)항에 따라 기존의 구매자에게 청구한다.
  - (d) 판매자는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상품에 대한 대금 분할지급에 대해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상품 대금 지급에 대해 구매자에게 신용거래를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다.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대금 분할 지급에 동의하거나 구매자의 신용거래를 연장하기로 동의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 금액의 합의된 할부금액을 매월 구매자에게 청구한다. 판매자는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발효되는) 통지를 함으로써 구매자의 신용거래나 상품 대금 분할 지급에 대한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 (e)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출한 개별 청구서를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 (i) 청구서 일자로부터 30일 또는 계약에 합의된 기간 후 중, 선평래한 시점까지; 그리고
    - (ii) 대한민국 한화(또는 판매자가 수시로 서면으로 합의한 다른 통화)로 판매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f) 대금 지급 기한은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조건에 해당한다.
  - (g) 구매자가 본 계약 상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수시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 목적 상 과세 대상인 상품을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공급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유효한 부가가치세 청구서를 수령한 때, 용역이나 상품 제공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가 금액을 해당 용역이나 상품에 대한 대금 지급과 동시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h) 법률이 이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상계, 반대 청구, 할인, 공제 등에 의해 감액하지 않고 계약 상 기한이 도래한 모든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i) 판매자가 송금된 금액을 수령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j) 계약 상 판매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대금은 다른 모든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즉시 기한이 도래한다.
  - (k) 구매자가 특정 채무를 분할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판매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분할된다. 판매자는 기한이 도래한 모든 항목에 대한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한 하나 이상의 특정 항목에 지급된 금액 전체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15. 취소

- (a)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본 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 (b) 판매자가 구매자가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타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 수수료는 취소되는 계약 유형에 따른다. 특수 장비에 대한 계약의 취소 시, 주문확인서가 발송된 후 계약금액의 100%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 (c) 구매자가 특별 요구조건에 따라 주문한 상품 또는 용역 (또는 상품과 용역 모두)의 제공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는 데 판매자가 동의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조건 제15조 제(b)항에 따라 부과된 취소 수수료에 추가적으로, 계약 취소 시까지 판매자에게 발생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16. 지식재산

- (a)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 (i) 상품과 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도면, 설계, 샘플, 모델 그리고 이와 유사한 항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상품 그리고 판매자가 직접 또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작성한 일체의 자료(“상품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경우) 판매자 또는 상품을 제조한 제3자의 자산이다;
  - (ii) 계약조건이나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상품 또는 상품 자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나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뒷 내용 삭제
  - (iii) 상품에 부착되거나 적용되는 일체의 상표권에 대한 모든 영업권(goodwill)은 판매자 또는 당시 상표를 소유하는 다른 모든 소유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 (b) 구매자는 상품을 재포장하거나,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자의 상표 또는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문구나 표시를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하거나, 누락시키거나, 또는 다른 추가적인 표시나 문구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 (c) 구매자는 (계약조건 또는 계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가 소유하거나 전 세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상표 또는 상호와 동일한 것으로 혼동을 주거나, 이와 유사하거나 이를 포함한 모든 상표나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 (d) 언제라도 상품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또는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i)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을 수정하거나 교체; 또는

- (ii) 상품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구매자에게 이를 제공; 또는
- (iii)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에서 판매자가 자신의 장비에 적용하는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상품을 재구매.

(e) 구매자는 즉시 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i) 구매자가 알게 된, 상품 또는 상품 자료 (또는 상품과 상품 자료 모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침해, 침해 우려 또는 침해 의심이 되는 상황; 그리고
- (ii) 구매자가 알게 된, 상품의 판매나 광고 또는 상품 자료 (또는 상품과 상품 자료 모두)의 이용이 다른 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제3자의 청구.

(f) 구매자는 (판매자의 요청 시, 판매자의 비용으로) 판매자가 제16조 제(e)항에 규정된 침해 또는 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며,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상기의 청구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g) 제3자가 상품 또는 상품 자료 (또는 상품과 상품 자료 모두)의 지식재산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근거로 구매자에게 청구, 절차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자신이 경비를 부담하여 상기의 청구, 절차 또는 소송을 방어해야 한다:

- (i) 구매자는 즉시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상기의 청구, 절차 또는 소송에 대해 통지하고;
- (ii) 판매자가 상기의 청구, 절차 또는 소송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판매자는 상기의 침해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수권대리인을 제외한 자가 상품 또는 상품 자료 (또는 상품과 상품 자료 모두)를 변경하거나 또는 상품 또는 상품 자료 (또는 상품과 상품 자료 모두)에 판매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제품 또는 제3자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부착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위에서, 또는 상기의 청구, 절차 또는 소송이 구매자가 상품 명세서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거나 또는 구매자가 설계하거나 선택한 항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경우, 상기의 청구, 절차 또는 소송에 대해 책임과 방어를 부담하지 않는다.

(h) 판매자는 제16조 제(g)항에 명시된 침해를 근거로 구매자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에 따라 산정된 일체의 책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i)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판매자가 소유한다.

(j) 판매자의 자료, 장비, 서류와 기타 자산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라이선서의 독점적인 자산이며 판매자가 요청한 때 반환되어야 한다.

## 17. 거래 금지

- (a) 구매자는 상품을 대한민국,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령 상 거래 금지 대상인 제3자(“제제대상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매자에게 확약한다.
- (b) 제17조 제(a)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판매자가 구매자가 제제대상 제3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공급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믿을 합리적인 근거를 통지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통지한 대 상품의 전부나 일부의 납품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부담하지 않는다.

## 18. 책임 제한 및 배제

- (a) 제18조 제(b)항의 조건에 따라, 판매자가 본 계약 상 구매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으로 제한한다.
- (b) 계약조건외의 다른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사기나 허위진술 또는 판매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청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나 신체 사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 (c) 구매자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보증 제한과 판매자의 책임에 대한 모든 제한과 배제가 합리적이며 상품 또는 용역 (또는 상품과 용역 모두)의 가격에 반영되었으며 구매자가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 (d) 계약조건 제18조 제(a)항과 제(b)항 또는 기타 일체의 조건에 따라 이를 제한하지 않고, 판매자는 계약, (과실을 포함한) 불법행위, 법령 상의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상품 공급 계약(또는 상품 및 용역 계약의 상품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일체의 (용어가 정의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부담하지 않는다.
- (e) 제18조 제(a)항 또는 제(b)항의 조건 또는 기타 일체의 조건에 따라 이를 제한하지 않고:
  - (i) 판매자는 계약, (과실을 포함한) 불법행위, 법령 상의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용역 제공 계약(또는 상품 및 용역 계약의 용역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수익상실 또는 기타 일체의 간접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 (ii) 계약, (과실을 포함한) 불법행위, 법령 상의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용역 제공 계약(또는 상품 및 용역 계약의 용역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일체의 손실에 대한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총 책임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역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 (f) 견적서 또는 주문확인서의 정보가 상품과 용역 이외의 제품과 관련하여 적용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g) 계약조건 제18조는 계약 해지 또는 취소 이후에도 유효하다.



## 19. 불가항력

- (a) 판매자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하여 계약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해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b)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하여 44영업일 이상 판매자가 용역이나 상품 (또는 용역과 상품 모두) 제공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는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에 제한을 받지 않고,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즉시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 20. 계약불이행, 해지, 회수, 중단

- (a)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i) 구매자가 지급기한일에 계약 상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ii) 구매자가 판매자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위반 사항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 구매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고 5 영업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
  - (iii) 판매자가 구매자와의 기타 일체 약정을 해지한 경우;
  - (iv) 구매자가 파산 상태에 이르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채무 상환을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또는 채무상환무능력을 인정한 경우; 또는
  - (v) 구매자가 채무 일정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집단 또는 특정 집단의 채권자들과 협상을 개시하거나, 지불능력이 있는 합병(solvent amalgamation)의 목적만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들과의 조정이나 화의를 제안하거나 체결한 경우;
  - (vi) 지불능력이 있는 합병(solvent amalgamation)의 목적만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의 해산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거나, 통제가 제공되거나, 결의안이 통과되거나 또는 이에 대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
  - (vii) 구매자의 채권자 또는 (저당권자 등)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부담을 가진 자가 구매자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이를 점유하거나, 또는 동산압류, 집행, 차압 또는 기타 절차가 설정되거나 집행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상기의 압류나 절차가 14일 내에 기각되지 않은 경우;
  - (viii) 재산관리인 선임에 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명령이 내려진 경우 또는 구매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 (ix) 구매자의 자산에 대한 부담을 설정한 자가 법정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거나 선임한 경우;
  - (x) 다른 자가 구매자의 자산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게 되거나 구매자의 자산에 대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 (xi) 구매자에 대하여 제20조 제(a)항 제(iv)호 내지 제(x)호에 명시된 사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일체의 사건이나 절차가 해당 관할권에서 발생된 경우;
  - (xii) 구매자가 자신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우려가 있거나, 수행을 중지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 (xiii) 판매자가 판단했을 때 구매자가 계약 상의 의무를 적합하게 이행할 능력이 위태로울 정도로 구매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경우.
- (b) 판매자가 제20조 제(a)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판매자는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계약조건 등에 따른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권리를 가진다:-
  - (i) 구매자와의 계약 상 납품되어야 할 상품 납품 중단;
  - (ii)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품("미이전 상품")의 판매나 이용을 할 명시적인 권리나 묵시적인 권한 취소;
  - (iii) 구매자에게 미이전 상품의 인도를 요청; 그리고 구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의 부지, 공장 또는 장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이전상품이 보관되고 있거나 보관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지에 출입하여 이를 회수.

## 21. 기밀유지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수령당사자")는 기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상대방 ("공개당사자") 또는 상대방의 직원, 대리인이나 하청업체가 수령당사자에게 공개한 모든 기술 또는 상업적인 노하우, 사양, 발명, 절차 또는 계획 그리고 수령당사자가 취득하게 되는 공개당사자의 사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타 일체의 기밀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수령당사자는 상기의 기밀정보를 계약 상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자신의 직원, 대리인과 하청업체에게만 공개하고, 상기의 직원, 대리인과 하청업체가 계약 당사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제21조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법률, 정부기관이나 규제기관 또는 관할법원에 의해 공개당사자의 기밀정보 공개가 요구될 경우 수령당사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는 계약 해지나 취소 이후에도 유효하다.

## 22. 기타 조항

- (a) 판매자의 계약조건 상의 권리는 일반 법률 등에 따라 판매자가 가지는 기타 일체의 권리에 추가적이다.
- (b) 구매자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 구성될 경우, 이들 각각은 계약 상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 (c)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 상의 거래 또는 권리나 의무 (또는 권리와 의무 모두)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나 부담을 설정하거나, 하청을 주거나 또는 처분해서는

- 안 된다.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구매자가 상기와 같이 행위하고자 할 경우, 이는 무효이다.
- (d) 판매자는 언제라도 계약 상의 거래 또는 권리나 의무 (또는 권리와 의무 모두)의 전부나 일부를 일체의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나 부담을 설정하거나, 하청을 주거나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e) 판매자의 계약이나 법률 상의 권리 포기는 서면의 경우에만 유효하다. 판매자가 계약 또는 법률 상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행사하는 데 실패하거나 지체할 경우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할 경우, 이는 해당 권리나 구제수단의 추가 행사 또는 다른 모든 권리나 구제수단의 행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특정 권리나 구제수단을 1회 행사할 경우 이로 인해 해당 권리나 구제수단 또는 기타 일체의 권리나 구제수단의 추가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 (f) 판매자가 구매자의 계약의 특정 조항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할 경우, 이는 이후 구매자의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약의 다른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g)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조건을 집행할 수 없다.
  - (h) 제21조는 계약 해지나 취소 이후에도 유효하다.
  - (i) 본 계약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 국내법을 따른다.

### 23. 통지

- (a) 계약조건 또는 계약 상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우편료 선불의 등기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한국스파이텍스사코(주)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길 99)주소로 판매자의 사무담당자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통지한 다른 주소나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b) 계약조건 또는 계약 상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우편료 선불의 등기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계약조건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통지를 수령하는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 (c) 통지는 다음 각호의 시점에, 해당 당사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 (i) 우편료 선불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발송 후 2영업일 (발송일 제외); 또는
  - (ii) 인편 전달의 경우, 전달일.